

# 이메일 주소 확인서

CCAP 양식 6005(21년 10월 개정)

**설명:** CCAP 양식 6003, 이의제기 통지서(Notice of Appeal)를 대마초 통제 이의제기 패널에 제출하는 개인은 16 CCR 6005(a)의 요구에 따라 이 양식을 작성하여 패널에 제출해야 합니다. 이의제기 타방은 이의제기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후 60일 이내에 이 양식을 작성하여 패널에 제출하고 16 CCR 6005(b)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양식의 사본을 이의제기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

## A. 사건 정보

이름 또는 기관: \_\_\_\_\_

(통제국 대표로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 "Department of Cannabis Control(대마초 통제국)"이라

기재하십시오.)

작성자(하나만 선택):

항소인

피항소인

기타(설명 기재: \_\_\_\_\_)

이의제기 대상 사건: \_\_\_\_\_

(사건명과 사건번호 기재)

## B. 공식 이메일 선택

귀하는 상기 명시된 이의제기와 관련된 모든 서신, 통지서, 변론, 결정 및 기타 서류의 송달을 위해 공식 이메일 주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해당되는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공식 이메일 주소를 제공함으로써 귀하는 대마초 통제 이의제기 패널(Cannabis Control Appeals Panel) 및 기타 모든 이의제기 당사자의 문서를 이메일로 송달받는 데 동의합니다. 공식 이메일 주소 제공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우편 주소를 제공하여 우편 송달 수신에 동의해야 합니다.

본인은 이의제기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아래 제공된 공식 이메일 주소로 송달받는 데 동의합니다.

공식 이메일 주소: \_\_\_\_\_

본인은 이의제기와 관련된 문서를 이메일로 송달받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. 이의제기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다음 우편 주소로 보내주십시오.

우편 주소: \_\_\_\_\_

**송달 증명서:** 16 CCR 6005(b)에 따라 이 양식을 대마초 통제 이의제기 패널(Cannabis Control Appeals Panel)에 제출하는 개인은 이 작성된 양식의 사본을 이의제기의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.

\_\_\_\_\_  
서명

\_\_\_\_\_  
날짜

\_\_\_\_\_  
이름(정자로 작성):